

# 절차적 통지문

# 보호

2017년 12월



## 목차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 .....	2
부모로서의 양부모 .....	2
아동 찾기 .....	2
사전 서면 통지 .....	2
부모 동의 .....	2
외부 교육 평가 (IEE) .....	4
징계 절차 .....	4
교육 기록 .....	7
부모에 의한 자발적 사립학교 배정 .....	9
FAPE 문제로 인한 부모의 사립학교 배정 .....	9
18세가 된 아동에게의 권리 양도.....	10
대리 부모 .....	11
특수교육 정보 .....	11
의견 불합치 해결하기.....	12
주(州) IEP 조력중재.....	12
중재 서비스 .....	12
특수교육 이의 신청 분쟁해결 과정.....	13
특수교육 이의 신청 분쟁해결 과정.....	14

## 절차적 보호 통지문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

2004 년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IDEA)은 학교가 해당 법과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절차상 보호에 대한 모든 설명이 포함된 통지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텍사스 교육청(TEA)이 제작한 이 문서는 통지문 규정을 만족시키고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

장애인 교육법에서 용어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주(州)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후견인,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대리인(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 아동 복지의 법적 책임인, 대리부모를 의미합니다. 용어 모국어는 영어 구사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청각장애 또는 청각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 모국어는 해당 개인이 평상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이 절차상 보호 통지문을 한 학년에 해당하는 수학연도당 단 1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의뢰 또는 부모 요청에 따른 심사가 있거나 텍사스 교육청에 제기된 특수 교육 이의 신청을 최초 수신한 경우, 수학 연도에 발생한 적법절차 심의회 이의 신청을 최초 수신한 경우, 아동의 배정 변경을 요하는 징계 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는 이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와 학교는 입학, 사정, 종료(ARD) 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ARD 위원회는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ARD 위원회는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개발, 검토 및 조정하며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ARD 위원회 및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학교에서 동봉한 부모를 위한 입학 사정 및 종료 절차 안내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http://framework.esc18.net/>)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 ■ 부모로서의 양부모

장애 아동의 양부모라면 특수교육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고, 아동의 다음 ARD 위원회 회의 전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모 역할을 하기 시작한 지 90 일 이내 필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 역할을 하거나 다른 아동에 대해 부모 또는 대리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가 부모 역할의 권리를 거부한다면 TEA 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아동 찾기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텍사스 주 의 모든 장애아동은 반드시 확인 및 평가되고 그 소재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아동 찾기로 명명합니다.

### ■ 사전 서면 통지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기술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 통지는 학교가 제안 또는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 학교가 해당 행위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 이유, 학교가 해당 행위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데 사용한 각 심사 절차, 평가,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장애인 교육법의 절차상 보호에 따라 부모가 보호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한 기술서, 이 절차상 보호 통지문을 획득하는 방법,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 연락처, ARD 위원회가 자녀를 위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옵션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학교가 행위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기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는 행위를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 수업일 기준 최소 5일 전(부모가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한 경우 제외)에 미리 사전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지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번역되거나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학교는 구술 방식으로 통지를 번역하거나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는 부모의 모국어에서 통용되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전달하여 부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후 언제라도 서비스 동의를 철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교는 자녀를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가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가 전자메일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는 전자메일(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 부모 동의

학교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전 부모에게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한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학교가 동의를 구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본인의 모국어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학교가 동의를 구한 활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표시해야 하며 이 서면 동의서는 해당 활동, 공개될 기록 및 그 공개 대상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이 동의서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길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동의를 제공하고 이를 철회하면, 이 철회는 소급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부모의 동의 확보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학교측의 노력(통화 상세 기록, 서신 사본, 부모측 가정 및 직장 방문 상세 기록)를 포함해야 합니다.

- ◆ **최초 평가**—자녀가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초 평가 실시 전, 학교는 제안하는 평가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전달하고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학교는 최초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가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는 향후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피후견인 자격으로 본인과 거주하지 않고, 학교가 부모를 찾는데 실패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 권한이 박탈된 경우 또는 아동이 타인에게 배정된 경우 학교는 부모의 동의를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초 서비스**—학교는 또한 최초로 아동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최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제공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학교는 FAPE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ARD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아동의 IEP 개발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재평가**—학교는 아동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학교가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응답을 받는데 실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절차 중단**—아동이 공립학교에서 수학하고 부모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를 통해 아동의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심의회 사무관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동의 평가를 학교에 명령하거나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동의하였다가 학교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이후 서면으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학교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중재절차나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 위한 심의회 사무관 시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적법절차 절차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는 학교가 자녀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모든 아동에게 실시된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해당 테스트 또는 평가가 모든 아동의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를 사용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기타 다른 서비스 이용,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외부 교육 평가(IEE)

학교가 제공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공적 비용으로 학교 비관계자가 아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공적 비용이란 학교측이 평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학교가 해당 평가 비용이 부모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외부 교육 평가(IEE)는 학교에 고용되지 않은, 전문 평가자가 수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IEE를 요청하면 학교는 평가 기준 및 IEE 획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부모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부모에게 해당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비합리적으로 IEE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를 수행한 경우마다 공적 비용으로 한번의 IEE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가 이 IEE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한 경우, 학교는 이 비용을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여 해당 평가가 적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IEE 기준**—IEE가 공적 비용으로 수행되는 경우, 평가 위치, 평가자 자격을 포함한 평가 획득 기준은 학교가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IEE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부합하는 범위)이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기준을 제외하고, 학교는 공적 비용으로 치뤄지는 IEE 획득과 관련하여 조건을 달거나 일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심의회 사무관 판결**—학교가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여 심의회 사무관이 학교의 평가가 적합하였거나, 부모가 획득한 IEE 가 학교의 IEE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학교는 IEE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사비로 실시한 IEE**—부모는 항상 자비로 IEE 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 지불 주체와 관계 없이 학교는 IEE 가 학교 기준과 부합하는 경우 자녀에게 제공되는 FAPE 에 대한 모든 결정에 해당 IEE 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IEE 를 적법절차 심의회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 **심의회 사무관이 명령한 IEE** — 심의회 사무관이 적법절차 심의회 과정에서 IEE 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징계 절차

아동이 학교 규율을 위반하여 학교가 아동을 현재 교육기관 배정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배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아래 **배정 변경** 참조) 학교는 특정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수업일 기준 10 일 이하의 퇴출**—아동이 학교 규율을 위반하면 학교는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해당 아동을 현재 교육기관 배정에서 수업일 기준 1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는 비장애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이 단기 퇴출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가 아동을 정학 처분하면 주법에 따라 정학은 수업일 기준 3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각 수학연도별 수업일 기준 10 일 동안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퇴출된 경우, 퇴출 이후 기간 동안 아동은 추가 권리를 갖습니다. 이어진 퇴출이 수업일 기준 연속 10 일을 초과하지 않고, 퇴출이 아동의 배정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아래 **배정 변경** 참조), 학교 담당자는 최소 1 명 이상의 아동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의 IEP 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 **배정 변경**—퇴출이 수업일 기준 연속 10 일을 초과하거나 수업일 기준 총 10 일을 초과하는 단기 퇴출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동의 배정이 변경됩니다. 퇴출이 고정적으로 반복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는 각 퇴출의 기간, 퇴출된 총 시간, 퇴출의 빈도 등의 요소와 함께 반드시 아동의 행동이 지난 연이은 퇴출을 야기한 행동과 실질적인 유사점이 없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출의 양상이 배정의 변경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학교가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적법절차 과정 및 법적 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 규율 위반으로 아동의 배정 변경이 결정된 날짜에 학교는 이 결정을 부모에게 통보하고 이 절차상 보호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율 위반으로 인한 아동의 배정 변경 결정 이후 수업일 기준 10 일 내 학교, 부모 및 ARD 위원회 담당자들(부모 및 학교가 공동 결정)은 **증상 결정 심사(MDR)**를 수행해야 합니다.

MDR 수행시 담당자는 아동의 파일에 담긴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IEP, 모든 선생님의 관찰 내용 및 부모가 제공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담당자들은 아동의 행위가 아동의 IEP 실패의 결과인지 또는 아동의 행위가 아동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또는 그 결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심사 담당자들이 위 사례 중 하나로 의견을 좁히는 경우, 아동 행위는 아동의 장애에 따른 증상으로 간주됩니다.

- ◆ **증상에 의한 결과인 경우**—아동의 행위가 장애에 따른 증상인 경우, ARD 위원회는 **기능적 증상 평가(FBA)**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평가가 아동의 교육기관 배정 변경을 야기한 행위 발생 시 실시되었고 아동의 **행동 개입 계획(BIP)**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동의 행위가 학교측이 아동에게 제공한 IEP 실패에 따른 직접적 결과인 경우 학교는 즉시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명시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ARD 위원회는 부모와 학교가 BIP 교정의 일환으로 자녀의 배정을 변경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아동을 퇴출했던 교육기관으로 아동을 다시 배정해야 합니다.

- ◆ **특수한 상황**—다음의 경우 학교는 아동의 행위가 장애 증상인지가 결정되기 전 수업일 기준 45 일 내에서 **임시대안 교육환경(IAES)**으로 아동을 퇴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학교 또는 학내, 학교 행상에 무기를 반입 또는 소유한 경우, 학교, 학내, 학교 행사에서 불법 약품을 고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규제되는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종용하는 경우, 학교, 학내,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아동의 행위가 증상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경우**—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 증상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장애아동은 FAPE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 ◆ **대안 환경**—문제 행동이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거나 아동의 장애 증상에 기인하지 않아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퇴출되는 경우, 아동의 ARD 위원회는 IAES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은 계속하여 FAPE의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다른 환경에 있더라도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은 문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합한 FBA, 행동 개입 서비스 및 행동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급행 적법절차 심의회** —

징계 결과 또는 증상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급행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학교측이 아동이 현재 교육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아동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도 급행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심의회가 요청된 후 수업일 기준 20 일 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심의회 이후 수업일 기준 10 일 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와 부모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동은 심의회 사무관이 판결을 내리거나 학교의 IAES 배정이 만료할 때까지(둘 중 먼저 만료되는 날까지) IAES 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급행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 사무관은 아동의 IEP 배정 유지가 실질적으로 아동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일 기준 최대 45 일 이내에서 적합한 IAES 내 아동을 계속 배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아동의 행동이 장애에 인한 증상일 경우에도 IAES 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의회 사무관은 퇴출된 교육기관으로 아동을 재배정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특수교육 적합성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아동의 보호**—

학교가 징계를 야기한 행위가 있기 전 아동이 장애아동인지 여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경우, 해당 아동은 장애인 교육법이 제공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학교는 부모가 관리자 또는 선생님에게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 전달한 경우, 부모가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아동의 평가를 요청한 경우, 아동의 선생님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가 아동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특수교육 담당이사 또는 기타 감독 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교는, 부모가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동에 관련된 장애인 교육법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이전에 특수교육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및 결정된 경우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모가 서비스에 동의하였다가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부모는 장애인 교육법 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아동은 비장애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조치의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징계 조치에 처해진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최초 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는 급행으로 실행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학교 책임자가 결정한 아동의 교육기관 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교육 서비스 없는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합니다.

◆ **경찰기관 및 사법당국에의 의뢰 및 조치**—

장애인 교육법은 학교가 장애인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적합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경찰기관 및 사법당국이 장애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법 및 주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장애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학교는 아동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학교가 범죄를 신고한 기관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 ■ 교육 기록

교육 기록이란 귀하의 아동과 직접 관련하며, 학교 또는 학교를 위해 역할하는 주체가 관리하며, FERPA 와 34 연방규정집(CFR) 파트 99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 예외에 적용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 ◆ 부모에게 통지—

텍사스 교육청은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주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통지의 범위에 대한 설명,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가 관리되는 아동에 대한 설명 획득한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에 사용할 주(州)의 방식(수집된 정보의 출처 포함), 해당 정보의 사용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의 보관, 타인 공개, 유지 및 파기에 있어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할 정책 및 절차의 요약, FERPA 및 34 연방규정집(CFR) 파트 99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련된 아동 및 부모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는 아동의 이름, 부모의 이름, 다른 가족의 이름, 주소, 개인 식별 번호(사회 보장 번호 등), 합리적인 확신을 불러올 수 있는, 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목록을 포함합니다.

대규모의 아동 찾기 이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찾고 확인하여 평가하는 활동에 대해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수율의 신문

또는 기타 미디어 또는 그 모든 수단을 통해 해당 통지가 발행 또는 공표되어야 합니다.

### ◆ 보호 및 파기—

학교는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아동 기록의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 기록은 34 CFR 파트 99의 교육 기록의 정의에 따른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아동 기록에 있는 정보가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참여 수업, 수료한 학년 등급,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아동 기록 내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파기는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거하는 행위, 또는 물리적 파기를 통해 정보의 대상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유형 및 위치—

부모는 학교가 수집, 관리,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요청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액세스 및 일정—부모는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의 교육 기록 전체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후견인, 별거 또는 이혼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주 법에 따라 당사자가 아동 기록의 열람 및 검토 자격 없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이 열람 및 검토 자격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부모는 또한 타인에게 아동 기록 열람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ARD 위원회 회의 전, 또는 모든 적법 절차 심의회 또는 분쟁해결 세션 이전, 요청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 **1명 이상의 아동 정보—**

1명 이상의 아동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교육 기록의 경우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정보 또는 해당하는 특정 정보만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설명, 사본 및 수수료—**

온당한 범위 내에서 부모가 학교에 기록의 해석 및 설명을 요구한 경우 학교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부모가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본의 제공인 경우,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 기록을 찾거나 복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록 열람 및 검토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복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요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액세스—**FERPA는 학교 사무관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가 임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기관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 부모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성인이 되는 적법한 아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학군 내에 위치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수학할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가 위치한 학군 사무관 및 거주하는 학군 사무관들의 식별 가능한 아동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는 부모가 기록 비공개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아동의 특수교육 기록을 검토한 모든 사람의 기록(부모 및 학교 책임자 제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토한 사람의 이름, 액세스 날짜 및 해당인이 기록 검토 권한이 승인된 이유(목적)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의 직원 1명은 식별 가능한 모든 개인 정보의 기밀성 유지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여야 합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사용, 수집하는 모든 사람은 장애인 교육법 및 FERPA에 따라 기밀성에 대한 주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는 공개 열람을 위해 학교에서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해당 직원의 이름 및 직책이 담긴 현재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록 수정—**부모가 아동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학교측에 요청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일 내 학교는 정보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요청한 정보의 수정을 거부하면, 부모에게 거부를 통보하고 기록의 정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유형의 심의회는 FERPA에 따른 지역 내 심의회로 독립된 심의회 사무관이 진행했던 이전의 장애인 교육법상의 적법절차 심의회와 다릅니다.

심의회 결과, 학교가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아동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학교는 정보를 변경하고 부모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회 결과, 학교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동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학교 아동의 기록 또는 논란이 된 부분을 학교가 관리하는 한, 부모가 아동 기록의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 기술서를 첨부할 권리가 있음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가 아동에게 최초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이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학교는 아동의 이전 특수 교육 서비스 내용에 대한 어떤 주석도 제거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학교측에 아동 기록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부모에 의한 자발적 사립학교 배정

부모는 자발적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공립학교가 해당 아동에게 FAPE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아동을 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배정된 장애아동의 모든 교육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공립학교는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정한 아동을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관리되는 장애아동 인구로 등록해야 합니다.

#### ■ FAPE 문제로 인한 부모의 사립학교 배정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있어 공립학교와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사립 학교에 아동을 배치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이전에 공립학교의 책임 하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부모가 공립학교의 의뢰 또는 동의 없이 아동을 사립 학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수학하도록 선택한 경우, 법원 또는 심의회 사무관이 공립학교가 아동 입학 전 일정에 맞춰 FAPE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모의 사립학교 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의회 사무관 또는 법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수학 비용을 변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사무관 또는 법원은 부모의 결정에 따른 배정이 텍사스 교육청 및 학교가 제공하는 주(州) 교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사립학교 배정 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비용 변제 제한—

위 문단에 언급된 변제 비용은 다음 경우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공립학교 배정에서 제외하기 전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ARD 위원회 회의에서 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에 배정하기 전 공적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는 의도 및 의견을 포함하여 공립학교가 FAPE 제공을 위해 제안한 교육 배정을 거부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 아동을 공립학교 배정에서 제외하기 전 영업일 기준 최소 10 일(영업일 중 공휴일 무시) 내 공립학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립학교가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제안서를 포함하여 아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발송하였으나 부모가 아동을 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법원이 부모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통지의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변제 비용은 삭감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가 통지 제공을 막은 경우, 위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할 책임에 대한 통지문을 부모가 전달받지 못한 경우, 위의 요건 준수가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 또는 심의회 사무관은 다음의 경우 임의로 부모가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변제 비용의 삭감 또는 거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글을 읽고 쓸 수 없거나 영어를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의 조건의 준수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18 세가 된 아동에게의 권리 양도

텍사스법에 의한 성인 나이는 18 세입니다. 성년이 된 경우 이 문서에 거론된 모든 부모의 권리가 18 세가 된 아동에게 양도됩니다. 성인이 된 학생에게 모든 부모 권리가 양도되고 해당 학생이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더라도, ARD 위원회의 통지 및 사전 서면 통지가 여전히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학교 또는 성년이 된 학생이 요청하거나 성년이 된 학생이 지원되는 결정 과정 동의를 통해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17 번째 생일날 또는 그 이전, IEP 는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절차상 권리가 아동의 18 세 생일을 기점으로 아동에게 양도됨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통지하였음을 명시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예외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법원이 지정한 성인 학생의 후견인**— 법원이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을 성인 학생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권리는 성년이 된 학생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법정 후견인이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 ◆ **수감된 성인 학생**— 성인 학생이 수감된 경우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모든 권리는 18 세가 된 성인 학생에게 양도됩니다. 부모는 특수교육 관련 사전 서면 통지를 수신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 ◆ **18 세 이전의 성인 학생**—아동이 18 세 이전 성인이 되는 텍사스 가족법 31 장에 명시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장에 따라 성인으로 결정되면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권리는 해당 시기에 아동에게 양도됩니다.
- ◆ **보호자 및 대안** - 아동의 17 번째 생일날 또는 그 이전, 학교는 귀하에게 보호자 역할 및 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되는 결정 과정 동의를 비롯해 아동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도와줄 기타 지원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 대리 부모

- ◆ **일반 규정**—이 문서에 설명된 권리는 장애아동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동의 부모를 찾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후견인이 국가인 경우(이 경우 법원이 이미 대리 부모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 학교는 아동의 부모를 대리할 대리 부모를 지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맥킨리-벤토 노숙자 지원법(<http://www.ed.gov/policy/speced/guid/spec-ed-homelessness-q-a.pdf>)에 정의된 바에 따라 거주지가 없고 동거인이 없는 청소년의 대리 부모도 지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적법한 대리 부모는, 아동의 이해와 상충되는 개인적 전문적 관심 영역이 없어야 하며 아동을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 규정에 따라 텍사스 교육청, 학교 또는 아동의 복지 및 교육에 관계된 기관의 직원의 경우 대리 부모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텍사스 특수교육 규정은 대리 부모가 지정된 후 90 일 이내에 수감된 대리 부모

아동의 대리 부모 역할을 하려면, 학교는 대리 부모가 필수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 역할을 하도록 학교에서 지정한 사람은 아동의 다음 ARD 위원회 회의 전 그리고 대리 부모 역할을 하도록 처음 지정된 지 90 일 이내에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의견 불합치 해결하기

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위 주체인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분쟁 발생 시마다 학교 담당자와 협력하여 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분쟁 해결 방법으로 네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州) IEP 조력중재, 중재 서비스, 특수교육 이의 신청 해결 절차 및 적법절차 심의회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 ■ 특수교육 정보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특수교육 정보 센터 번호(1-855-SPEDTEX (1-855-773-3839))로 전화하십시오. 위 번호로 연락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일반 영업시간 내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한된 청각 능력을 지니셨거나 청각 장애가 있으신 경우, 릴레이 텍사스(Relay Texas) 서비스 7-1-1 을 사용하여 위 음성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 ■ 주(州) IEP 조력중재

2013 년 통과된 주(州)법에 따라 텍사스 교육청은 주 IEP 조력중재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독립된 IEP 조력자가 장애학생의 향후 FAPE 제공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분쟁에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ARD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이 독립된 중재 조력자를 제공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학교측과 부모측의 서명이 포함된 필수 요청 양식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 분쟁은 IEP 필수 요소 하나 이상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ARD 위원회가 휴회하고 재개하기로 결정한 ARD 위원회 회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 부모와 학교는 의견 불일치로 종료된 ARD 위원회 회의로부터 5 일 내 필수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조력자 회의 재개가 결정된 날에 참석 가능해야 합니다.
- ▶ 분쟁은 장애증상 결정 또는 IAES 결정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 ▶ 부모와 학교는 특수 교육 중재와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분쟁의 문제가 특수 교육 이의 신청 또는 특수교육 적법절차의 대상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부모와 학교는 IEP 조력중재를 요청한 동일 수학연도에 동일한 아동에 대한 IEP 조력중재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필수 요청 양식은 영문 및 스페인어로 다음([http://tea.texas.gov/Curriculum\\_and\\_Instructional\\_Programs/Special\\_Education/Programs\\_and\\_Services/Individualized\\_Education\\_Program\\_Facilitation/](http://tea.texas.gov/Curriculum_and_Instructional_Programs/Special_Education/Programs_and_Services/Individualized_Education_Program_Facilitation/))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텍사스 교육청은 요청 시 해당 양식을 제공합니다. 텍사스 교육청 연락처 정보는 이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중재 서비스

중재는 아동의 확인, 평가, 교육기관 배정 및 FAPE 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모 및 학교측이 중재 방식에 합의하는 경우 텍사스 교육청이 중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합니다.

중재는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기타 권리에서 부모를 제외, 거부하거나 해당 절차를 지연시키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 시마다 자동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부모 및 학교측이 아동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부모는 중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텍사스 교육청 또는 텍사스 학교의 직원일 수 없으며, 업무 수행 목적과 이해 상충하는 모든 개인적, 전문적 관심 영역이 없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분쟁 해결에 교육을 받거나 해결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특수교육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공정해야 하며 중재 시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중재의 목적은 부모와 학교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재자의 목록은 다음(<http://tea.texas.gov/index4.aspx?id=5087>)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부모 및 학교가 중재에 합의하는 경우, 양측은 특정 중재자를 선택하거나 임의로 배정된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중재자는 즉시 연락을 취해 부모 및 학교 모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중재 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부모측은 변호사 또는 중재를 도울 수 있는 타인을 대동할 수 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부모는 변호사 또는 중재를 위해 고용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에서 발생한 논의는 비공개로 향후 적법절차 심의회나 법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州)법에 따라 이 사건 유형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 및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재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텍사스 교육청 웹사이트(<http://tea.texas.gov/index4.aspx?id=5087>)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 특수교육 이의 신청 분쟁해결 과정

특수교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 중 하나는 텍사스 교육청의 특수교육 이의 신청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공립 교육기관이 특수교육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부모는 이 문서 마지막에 제공된 텍사스 교육청 주소로 서면 이의 신청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대상 기관에게도 이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조직 모두 텍사스 교육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처리 스케줄은 TEA가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바로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면 이의 신청서는 반드시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1년 이내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반드시 공립 교육기관이 특수교육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이 위반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 본인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작성 당시 본인의 지식에 준하여 제안하는 해결방안 및 이 이의 신청이 특정 아동에 관련된 경우, 아동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주지가 없는 경우 연락가능한 연락처 정보와 아동의 학교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부모에게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자발적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또한 해당 교육기관에 이의 신청에 대응하고 이의 내용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서면 이의 신청서 수신 후 60일 이내, 특수한 경우 또는 양측이 동의하여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텍사스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공립 교육기관이 특수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합니다.

부모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판결 및 텍사스 교육청의 판결 이유가 포함된 서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텍사스 교육청이 공립 교육기관이 특수교육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공립 교육기관은 기술적 지원 참여, 협의, 및 행위 시정 등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발견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위 시정은 특정 아동 또는 아동의 집단에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의 제공,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향후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의 신청에 대한 텍사스 교육청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 제기가 중재 요청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동일 문제에 대해 적법절차 심의회도 요청하는 경우, 텍사스 교육청은 심의회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의 신청서 문제를 심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이의 신청서의 문제들은 일정 내 이 문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이의 신청서에 제기된 문제가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동일한 기관 및 제기자 조건에서 심리되는 경우, 이 심의회의 심리 판결이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텍사스 교육청 웹사이트([http://tea.texas.gov/index2.aspx?id=2147497560%23complaint\\_resolution](http://tea.texas.gov/index2.aspx?id=2147497560%23complaint_resolution))에서 이의 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조사 양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적법절차 심의회 프로그램

특수교육 분쟁을 해결하는 네 번째 방법은 적법절차 심의회 프로그램입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에서는 독립된 심의회 사무관이

양측의 증거를 심리하여 법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는 아동의 확인, 평가 또는 교육기관 배정 또는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이의 신청이 아동의 공립학교 최초 입학 지원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에 따라 심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아동은 일반 공립 학교 프로그램 내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요청의 근거가 된 위반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 1 년 내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1 년의 기간은 또한 공소시효라고 부릅니다. 학교측이 부모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학교측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오인한 특수한 경우로 인해 부모가 심의회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 심의회 요청에 적용되는 1 년 공소시효는 귀하가 현역 군인, 미국해양대기관리처 위원단 또는 미국공중보건국 위원단이며 민간구호요원법이라는 연방법의 공소시효 관련 사항에 적용될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면 부모는 학교가 특수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학교측이 부모측을 상대로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는 증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모든 문제에 있어 법원에 학교를 고소하기 전, 부모는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하기—

심의회를 요청하려면 부모 또는 부모측 변호사가 이 문서 마지막에 첨부된 주소로 텍사스 교육청에 적법절차 심의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 양식은 텍사스 교육청(<http://tea.texas.gov/index4.aspx?id=5090>)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텍사스 교육청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서는 반드시 다음 정보(아동의 이름 및 주소,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아동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아동의 학교 이름, 아동 문제 설명(문제와 관련된 사실 관계 포함), 작성 시 본인의 지식에 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를 포함해야 합니다

심의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면 요청서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위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요청서 전송 시까지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요청서 수신 후 10 일 내에, 이미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회신을 부모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요청서 수신 후 학교 측이 부모측이 전송한 요청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15 일 내 반드시 심의회 사무관 및 부모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부모측의 요청서에 정보가 충분한지의 여부를 5 일 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학교가 동의하거나 심의회 사무관이 심의회 5 일 전 허가한 경우에 한해 요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심의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청서를 제출한 측(부모 또는 학교)가 적법절차 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쟁해결 세션 일정 및 분쟁해결 기간이 수정된 요청서가 제출된 날짜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부모 또는 학교가 적법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역 내 이용가능한 무료/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 **분쟁해결 회의**—급행 심의의 경우(아래의 급행 분쟁해결 진행일정 참조),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서 수신 후 15 일 내 학교는 반드시 부모, 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 대표 및 부모와 학교가 선택한 ARD 위원회의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분쟁해결 회의로 명명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교는 부모가 회의에 변호사는 대동한 경우에만 한해 변호사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분쟁해결 기간 중 요청서 수신 후 30 일 이내에 요청서에 제기된 문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기간인 30 일 만료일부터 45 일 내 최종 판결이 공표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수한 예외 사항에는 30 일 분쟁해결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학교측 모두가 동의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채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부모가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회의 참석에 동의할 때까지 분쟁조정 절차 및 심의회 일정이 지연됩니다.

학교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고 해당 노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3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이후 심의회 사무관에게 제기된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건에 대한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측의 노력에 대한 기록은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상호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학교측의 시도(통화 기록 상세 정보, 전화 통화 결과, 부모에게 전송된 서신의 사본 및 모든 회신, 부모 직장 가정 방문 상세 기록)를 포함합니다.

학교가 요청서 수신 후 15 일 내에 분쟁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학교측이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심의회 사무관에게 요청하여 45 일 일정의 심의회 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학교가 서면으로 분쟁해결 회의 포기에 동의하면 바로 다음날 45 일 일정의 심의회가 시작합니다. 중재 또는 분쟁해결 회의 시작 후, 그리고 4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이전에, 학교와 부모가 서면으로 해결의 불가능함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날로 45 일 일정의 심의회가 시작합니다. 부모와 학교 양측이 분쟁해결 회의 종료일에 중재 방법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양측은 동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 절차를 계속할 것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중 일방이 중재 절차 중 이를 철회할 경우, 다음날로 45 일 일정의 심의회가 시작합니다.

분쟁해결 회의의 목적은 부모가 학교와 요청 내용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학교측에 요청서를 제기하게 된 분쟁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한 경우, 부모와 학교측은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면 합의서는 양측 중 일방이 서명한 날짜에서 영업일 기준 3 일 내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연방 지방 법원 또는 이런 유형의 사건 심리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집행 효력을 갖습니다.

요청서 수신 후 30 일 내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요청 내용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급행 심의 분쟁해결 회의**—급행 심의회의 경우, 학교는 급행 심의 분쟁해결 회의 요청을 접수받는지 7 일 이내 분쟁해결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부모는 학교가 15 일 내 요청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는 심의회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수업일 20 일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회의 이후 수업일 10 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 **심의회 사무관**—텍사스 교육청은 심의회 진행을 위해 독립된 심의회 사무관들과 계약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텍사스 교육청 또는 아동의 복지나 교육 관련 기관의 직원일 수 없으며, 심의회 목적과 이해 상충하는 어떤 개인적 또는 전문적 관심도 가져선 안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심의회 사무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각 심의회 사무관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사무관 목록을 관리합니다. 이 목록은 텍사스 교육청 웹사이트(<http://tea.texas.gov/index4.aspx?id=5090>)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텍사스 교육청 법률 서비스 사무실에 연락하여 목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이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 **절차 진행 중 아동 상태**

(현상 유지)— 적법 절차 심의회 및 모든 법원 항소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가 달리 동의하지 않은 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현재 배정된 교육기관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기관에 남아있는 조치를 **현상 유지**로 명명합니다. 관련 절차에 징계가 포함된 경우 징계 분쟁 중 아동의 교육기관 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징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심리가 공립학교에서 수학하고자하는 아동의 입학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아동은 부모의 동의에 의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학교 프로그램 내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3 세가 되어 **조기 개입 서비스(ESI)**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현상 유지는 조기 개입 서비스 내에 계속 배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고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에 대상이 아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심의회 이전**— 심의회가 열리기 영업일 기준 최소 5 일 전, 부모와 학교는 각측에 심의회에서 공개할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측은 해당 시기까지 제시되지 않은 증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평가 및 추천장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내 공개되지 않은 증거의 제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 도중**— 부모는 변호사 및 장애아동 교육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동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증거를 제시, 대질 및 반대신문을 하거나, 목격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부모는 아동을 대동하고 공개 심의회를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세션당 한 회씩, 합리적인 기준에서 부모와 아동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부모는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심의회 모든 진술 기록, 사실관계 및 판결을 서면 또는 전자 기록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판결**— 심의회 사무관의 판결은 아동이 적합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부모가 절차상의 문제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문제가 아동이 적합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아동의 교육적 혜택이 부재한 경우, 자녀에게 제공되는 적합한 무상 공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회가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회 사무관은 자녀가 적합한 무상 공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교육청은 최종 심리 판결이 30 일 분쟁조정 기간(적용 가능한 경우 재조정된 분쟁조정기간) 만료 후 45 일 내 양측에 우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행 심의의 경우 최종 판결은 심리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 10 일 내 도착합니다. 심의회 사무관은 일반 심의의 경우 양측 중 일방이 유효한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급행 심의의 경우 기한 연장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측 중 일방이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회 사무관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심의회 사무관의 판결은 자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제거한 다음 텍사스 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학교는 심의회 사무관이 판결에 제시한 기간 내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시된 기한이 없는 경우 학교가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판결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 10 일 내 이행합니다.

다만 항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 변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의 어떤 부분도 지난 심의회에서 해결된 사안 외의 별개 사안에 대한 부모의 적법절차 이의 신청 제기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민사 소송**—부모는 심의회 판결 및 결정이 공표된 후 90 일 이내 주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 절차에 따라 법원은 적법절차 심의회 기록을 전달받아 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증거를 심리해야하며, 증거의 우위도에 근거하여 적합한 구제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법 파트 B 의 어떤 부분도 미국 헌법 또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른 권리, 절차 및 해결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 전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구제안을 이용해야하며 이는 부모 또는 학교가 장애인교육법이 제공하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를 활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교육법의 법률과 중첩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결방법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장애인 교육법의 적법절차 심의회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 ◆ **변호사 비용 지급**—

부모가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법원에서 사건 일부 또는 전체에서 승소하면 판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분쟁조정 회의 또는 ARD 위원회 회의(심의회 담당자 또는 법원이 지시한 경우 제외)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적법절차 심의회 시작 전 10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의를 제안한 경우,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법원이 심의회 구제안이 합의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가 서면 합의를 제공한 후 발생한 업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또는 수임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또는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비합리적으로 분쟁을 지연시킨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이 지역 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수준의 변호사가 부과하는 시간당 요금을 비상식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변호사가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학교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을 삭감해야 합니다. 법원이 학교가 비합리적으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용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심의회 또는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였고, 부모측 변호사가 악의적, 비합리적,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을 제공하거나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연이은 소송이 명백히 악의적, 비합리적, 근거 없음으로 드러난 경우 법원은 부모 또는 부모측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학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부모측 변호사는 또한 제출한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서 또는 이어진 법적 절차가 단순 방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 소송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학교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역 내 연락처 정보		
학교	교육 서비스 센터	기타 리소스
이름:	이름: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특수교육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특수교육 정보 센터 번호(1-855-SPEDTEX (1-855-773-3839))로 전화주십시오. 이 번호로 연락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일반 영업시간 내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한된 청각 능력을 지니셨거나 청각 장애가 있으신 경우, 릴레이 텍사스(Relay Texas) 서비스 7-1-1 을 사용하여 위 음성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진행 대기 중인 특수교육 이의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텍사스 교육청의 연방 및 주 교육정책 부서(512-463-9414)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진행 대기 중인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지정된 중재자 또는 심의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텍사스 교육청 서비스에 서면 요청을 보내시려면  
다음 수신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Texas Education  
Agency 1701 N.  
Congress Avenue  
Austin, TX 78701-1494

**다음 부서 귀중:**

Division of Federal and State Education Policy

State IEP Facilitation Project

Office of Legal Services

Special Education Mediation Coordinator

Division of Federal and State Education Policy

Special Education Complaint Unit

Office of Legal Services

Special Education Due Process Hearings

텍사스 교육청 연방 및 주 교육정책 부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tea.texas.gov/index2.aspx?id=2147\\_491399](http://tea.texas.gov/index2.aspx?id=2147_491399)



**Fort Ben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Sources for parent/adult student to contact to obtain assistance in understanding procedural safeguards, the ARD process, and questions/concerns:

**Fort Bend ISD –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Phone: (281) 634-1143    Website: <https://www.fortbendisd.com/Domain/77>

**Dr. Charles Dupre**, Superintendent  
**Dr. Deena Hill**, Executive Director of Special Education  
**Sherlea Maston**, Director of Special Education  
**Christina Ritter**, Assistant Director of Special Education

<p align="center"> <b>Region IV Education Service Center</b>            7145 Tidwell Road            Houston, TX 77092            (713) 462-7708  <a href="http://www.esc4.net/specialeducation">www.esc4.net/specialeducation</a> </p>	<p align="center"> <b>Texas Workforce Solution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b>            6220 Westpark Suite 110            Houston, TX 77057            (713)267-8510  <a href="http://www.twc.state.tx.us">www.twc.state.tx.us</a> </p>
<p align="center"> <b>The ARC of Fort Bend County</b>            123 Brooks Street            Sugar Land, TX 77498            (281) 491-5959  <a href="http://www.arcoffortbend.org">www.arcoffortbend.org</a> </p>	<p align="center"> <b>Arc of Greater Houston – Familias Hispanas del Arc</b>            4410 Navigation Blvd.            Houston, TX 77011            (713) 957-1600 ext 117            Email Contact <a href="mailto:myrta@aogh.org">myrta@aogh.org</a> </p>
<p align="center"> <b>Disability Rights, Texas</b>            1500 McGowen Street Suite 100            Houston, TX 77004            (713) 974-7691            Toll-Free Intake Line for New Callers: 1-800-252-9108  <a href="http://www.disabilityrightstx.org">www.disabilityrightstx.org</a> </p>	<p align="center"> <b>Learning Disabilities Association of Texas</b>            P.O Box 831392            Richardson, TX 75083 – 1392  <a href="http://www.ldatx.org">www.ldatx.org</a>            Email Contact: <a href="mailto:contact@ldatx.org">contact@ldatx.org</a> </p>
<p align="center"> <b>Special Kids, Inc.</b>            9001 Airport Blvd. Suite 707            Houston, TX 77036            (713) 783-KIDS (5437)  <a href="http://www.specialkidsinc.com">www.specialkidsinc.com</a>            Email Contact: <a href="mailto:info-help@specialkidsinc-tx.org">info-help@specialkidsinc-tx.org</a> </p>	<p align="center"> <b>Texas Project First</b>  <a href="http://www.texasprojectfirst.org">www.texasprojectfirst.org</a>            1-855-SPEDTEX (1-855-773-3839)         </p>